

● 제33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 11.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367, 3368

I .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 10. 31.
다. 회부일 : 2025. 11. 04.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239억원(9.2%) 증가한 2,83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2026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59,406	283,348	23,942	9.2%
일반회계	259,406	283,348	23,942	9.2%

나. 세출예산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7,729억 원 대비 190억원(2.5%) 증가한 7,91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2026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82,836) 772,878	(×199,214) 791,861	(×16,378) 18,983	2.5%
일반회계	(×182,836) 772,878	(×199,214) 791,861	(×16,378) 18,983	2.5%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380) 10,597	(×379) 10,528	(×△1) △69 △0.7%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6,995	8,372	1,377 19.7%
		(×182,456) 755,286	(×198,864) 772,898	(×16,408) 17,612 2.3%

다. 기금운용계획안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87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236억원 대비 49억원($\triangle 20.7\%$) 감소한 규모임.

〈표〉 2026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비율)

부 서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식품정책과	23,682	18,764	$\triangle 4,917$	$\triangle 20.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세입 예산안 검토

가. 2026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

-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833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39억원(9.2%) 증액 편성되었음.

〈표〉 2026년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최종예산(①)	2026년 예산안(②)	2025년 대비 증감액 (② - ①)	증감율(%)
259,406	283,348	23,942	9.2%

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등’과 ‘세외수입’이며,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1,99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650억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증가(239억원)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등’(2025년 최종예산: 1,828억원 → 2026년 예산(안): 1,992억원)에서 전년 대비 164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국가 암검진 사업 국비 교부액 증가(95억원)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비 교부액 증가(61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임.

〈표〉 2026년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천원, %)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세 입 내 역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259,406,392	283,348,008	23,941,616	9.2%	
세외수입	72,824,620	65,036,459	△7,788,161	△10.7%	
경상적세외수입	38,073,052	36,258,217	△1,814,835	△4.8%	
재산임대수입	288,689	414,226	125,537	43.5%	
공유재산임대료	288,689	414,226	125,537	43.5%	· 어린이/은평/서북병원 부설주차장 등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59,202	38,583	△20,619	△34.8%	
주차요금수입	54,282	34,254	△20,028	△36.9%	· 보환연 부설주차장 수입 · 서북병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기타사용료	4,920	4,329	△591	△12.0%	· 은평병원/서북병원 이동전화 중계설비 전기료 등
수수료수입	36,738,613	34,512,286	△2,226,327	△6.1%	
증지수입	261,140	211,417	△49,723	△19.0%	· 보환연 시험검사 수수료
보건의료수수료	36,477,473	34,300,869	△2,176,604	△6.0%	·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운영수입
사업수입	111,675	88,410	△23,265	△20.8%	
기타사업수입	111,675	88,410	△23,265	△20.8%	· 제대혈은행 제대혈 공급 수입
이자수입	654,732	1,204,712	549,980	84.0%	
기타이자수입	654,732	1,204,712	549,980	84.0%	· 부서별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33,208,967	27,613,447	△5,595,520	△16.8%	
재산매각수입	111,606	94,573	△17,033	△15.3%	
불용물품매각대금	111,606	94,573	△17,033	△15.3%	· 보환연 공용차량, 불용용품 매각대금
보조금반환수입	31,813,943	26,649,741	△5,164,202	△16.2%	
시·도비보조금반환	24,983,022	20,176,837	△4,806,185	△19.2%	· 부서별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	4,491,743	4,637,361	145,618	3.2%	· 부서별 민간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2,339,178	1,835,543	△503,635	△21.5%	· 부서별 민간위탁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1,283,418	869,133	△414,285	△32.3%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세 입 내 역	
		2025 최종예산	2026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기부금수입	500,000	500,000	0	0.0%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관리과 기부금
	위약금	2,601	1,851	△750	△28.8%	·보환연 계약 지연배상금 등 위약금
	그외수입	330,817	367,282	36,465	11.0%	·부서별 급여반납금 등 기타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1,537,340	1,159,422	△377,918	△24.6%	
	지난연도수입	1,537,340	1,159,422	△377,918	△24.6%	·부서별 과년도 정수예상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61	5,373	112	2.1%	
	변상금	5,261	5,373	112	2.1%	
	변상금	5,261	5,373	112	2.1%	·어린이병원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보조금	182,836,125	199,214,089	16,377,964	9.0%	
	국고보조금등	182,836,125	199,214,089	16,377,964	9.0%	
	국고보조금등	182,836,125	199,214,089	16,377,964	9.0%	
	국고보조금	34,662,394	30,628,553	△4,033,841	△11.6%	·부서별 국고보조금 수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339,937	20,078,165	8,738,228	77.1%	·부서별 균특보조금 수입
	기금	136,833,794	148,507,371	11,673,577	8.5%	·부서별 기금보조금 수입
	지방채	0	8,200,000	8,200,000	순증	
	국내차입금	0	8,200,000	8,200,000	순증	
	지방채증권	0	8,200,000	8,200,000	순증	
	모집공채	0	8,200,000	8,200,000	순증	·공공의료과 모집공채(지방채 상환)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45,647	10,897,460	7,151,813	190.9%	
	보전수입등	3,745,647	10,897,460	7,151,813	190.9%	
	전년도이월금	987,926	885,057	△102,869	△10.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87,926	885,057	△102,869	△10.4%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등반환금	2,757,721	10,012,403	7,254,682	263.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757,721	10,012,403	7,254,682	263.1%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202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

-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7,919억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7,082억원 대비 11.8% 증액된 수준이며, 2025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7,729억 대비 2.5%가 증액된 수준임.

〈표〉 2026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82,836) 772,878	(×199,214) 791,861	(×16,378) 18,983	2.5%
일반회계	(×182,836) 772,878	(×199,214) 791,861	(×16,378) 18,983	2.5%
행정운영경비	(×380) 10,597	(×379) 10,528	(×△1) △69	△0.7%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6,995	8,372	1,377	19.7%
사업비	(×182,456) 755,286	(×198,864) 772,898	(×16,408) 17,612	2.3%

나. 최근 5년간 보건분야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51조 5,060억원 대비 보건분야 예산 편성 비율은 1.5%로 전체 예산대비 비중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시민건강국(보건분야) 예산편성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서울시	44조 2,190억	47조 1,905억	45조 7405억	48조 1,145억	51조 5,060억
보건분야	6,940억	6,250억	6,213억	6,960억	7,729억
비율	1.6%	1.3%	1.4%	1.5%	1.5%

※ 예산편성액은 회계연도별 당초예산 기준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제외

다. 2026년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

- 시민건강국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① 손목닥터9988,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도약 추진(509억원), ②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합돌봄체계 강화(373억원), ③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치료 및 출산전후 지원 확대(539억원), ④ 전 시민 대상 정신건강돌봄 서비스 접근성 유지(799억원), ⑤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인프라 지속 확대추진(189억원), ⑥ 시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서울 사업 추진(8억원), ⑦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상시 관리체계 유지(1,337억원)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세부 정책 분야별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정책 분야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손목닥터9988,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도약 추진 (509억원)	254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내년도 시민참여 (350만명 예상) 지속 확대	509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합돌봄체계 강화 (373억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59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지역사회 거주실현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사업 신규 추진	4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병원 노인 전문진료센터 신설 (※ 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서남병원)	10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치료 및 출산전후 지원 확대 (539억원)	보편화된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조성	28
	출산 당 25회씩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310
	2025년부터 지원 시작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계속 추진	201
전 시민 대상 정신건강돌봄 서비스 접근성 유지 (799억원)	광역·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대상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481
	치매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환자 대상 월 3만원(연36만원) 치료비 지원	318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인프라 지속 확대추진 (189억원)	공공의료의 수혜가 필요한 저소득시민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시립병원의 공익진료 유지 (※ 서울의료원 30억원, 보라매병원 29억원, 동부병원 12억원, 북부병원 74억원, 서남병원 7억원, 장애인치과병원 27억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10억원)	189
시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서울 사업 추진 (8억원)	운동습관 형성 및 체력등급 향상을 위한 전 시민대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신규 추진	8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상시 관리체계 유지 (1,337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지방비 분담률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사업비	425
	12세 어린이(18종)와 65세 이상 노인(2종)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실시	906
	취·위생해충 방제 지원 신규 추진	6

라.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

-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7과로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24.6%(1,89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건강관리과 22.7%(1,754억 원), 정신건강과 17.0%(1,315억원), 공공의료과 11.8%(913억원), 스마트건강과 7.1%(549억원), 보건의료정책과 6.0%(463억원), 식품정책과 4.2%(328억원)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사업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2.8%(216억 원), 서북병원 2.4%(185억원), 은평병원 2.2%(169억원), 어린이병원 1.6%(127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2026년 시민건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2025년도	2026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계	772,878 (100%)	791,861 (100%)	18,983	2.5%
보건의료정책과	47,471 (6.1%)	46,327 (6.0%)	△1,144	△2.4%
스마트건강과	62,838 (8.1%)	54,886 (7.1%)	△7,952	△12.7%
건강관리과	165,649 (21.4%)	175,389 (22.7%)	9,740	5.9%
정신건강과	125,486 (16.2%)	131,501 (17.0%)	6,015	4.8%
감염병관리과	166,943 (21.6%)	189,905 (24.6%)	22,962	13.8%
식품정책과	25,299 (3.3%)	32,794 (4.2%)	7,495	29.6%
공공의료과	109,868 (14.2%)	91,312 (11.8%)	△18,556	△16.9%
보건환경연구원	20,028 (2.6%)	21,611 (2.8%)	1,583	7.9%

어린이병원	10,562 (1.4%)	12,695 (1.6%)	2,133	20.2%
은평병원	20,772 (2.7%)	16,920 (2.2%)	△3,852	△18.5%
서북병원	17,962 (2.3%)	18,521 (2.4%)	559	3.1%

* 시민건강국 조직 일반현황('25.9월말 기준)

조직 : 1국 7과 35팀



- 사업소(4) :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 위탁병원(8) : 동부·보라매·북부·장애인치과·서남병원,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

인력

- 시본청 : 정원 189명, 현원 191명

구 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	연구직	임기제
계	189 / 191	57 / 61	111 / 112	3 / 1	2 / 2	16 / 15
보건의료정책과	38 / 44	17 / 18	19 / 25	1 / 0	0 / 0	1 / 1
스마트건강과	14 / 13	11 / 12	3 / 1	0 / 0	0 / 0	0 / 0
건강관리과	19 / 20	4 / 4	14 / 15	0 / 0	0 / 0	1 / 1
정신건강과	22 / 22	6 / 9	16 / 13	0 / 0	0 / 0	0 / 0
감염병관리과	37 / 38	4 / 7	20 / 18	0 / 1	2 / 2	11 / 10
식품정책과	39 / 36	6 / 5	28 / 28	2 / 0	0 / 0	3 / 3
공공의료과	20 / 18	9 / 6	11 / 12	0 / 0	0 / 0	0 / 0

- 사업소 및 출연기관 : 정원 3,071명 / 현원 2,858명

구 分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정원/현원	297 / 282	297 / 285	224 / 206	295 / 279	1,958 / 1,806

1)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11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응급의료기관 지원 \triangle 8억원, ②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triangle 7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 한편 ①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8억원, 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2) 스마트건강과

- 스마트건강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80억원)한 주요 사유는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91억원이 감액되었고,
 - 한편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3) 건강관리과

- 건강관리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97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68억원, ②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8억원, ③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편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triangle 10억원, ②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 \triangle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4) 정신건강과

- 정신건강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60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41억원, ②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8억원, ③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편 ①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triangle 9억원, ②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triangle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5)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230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국가 암검진 207억원, ②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국가예방접종 실시 1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triangle 8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6) 식품정책과

- 식품정책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75억원)한 주요 사유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편,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triangle 5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7) 공공의료과

- 공공의료과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triangle 186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triangle 16억원, ②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위탁운영 \triangle 73억원, ③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triangle 80억원, ④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triangle 9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8)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16억원)한 주요 사유는

생활 환경오염물질 검사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9) 어린이병원

- 어린이병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21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운영 14억원, ②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10) 은평병원

- 은평병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triangle 39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triangle 47억원, ②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triangle 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한편, 은평병원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28억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11) 서북병원

- 서북병원의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6억원)한 주요 사유는 ①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표〉 2026년 시민건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예산 사업수				주요 종합사업 현황(5억 이상)	
		2025	2026년				
			사업수 총계	증액 사업수	감액 사업수	전년과 동일사업 수	
전체	791,861	314	308				
보건의료 정책과	46,327	42	39	18	1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820,000천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629,470천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지원 △818,056천원 -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서울건강장수센터 조성 및 운영) △683,000천원 -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국비) △560,000천원
스마트 건강과	54,886	2	2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시스템 구축 운영 1,110,176천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9,060,052천원
건강 관리과	175,389	53	53	21	2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781,504천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449,500천원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1,041,032천원 - 생애 초기 건강관리 706,130천원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6,775,000천원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800,000천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33,565천원 - 건강증진사업 관리 △604,982천원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604,018천원 -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 △800,000천원
정신 건강과	131,501	41	39	25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4,115,660천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899,702천원 - 서울시 차상예방센터 운영 1,117,722천원 -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1,761,532천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742,000천원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822,000천원 -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900,000천원
감염병 관리과	189,905	45	45	15	2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558,125천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국가예방접종 실시 13,268,780천원 - 국가 암검진 20,687,500천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7,950,231천원 - 입원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795,000천원
식품 정책과	32,794	23	22	6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바우처 지원 8,875,000천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51,855천원
공공 의료과	91,312	22	22	12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1,674,560천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600,000천원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5,658,223천원

							<p>○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586,295 천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7,280,309 천원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7,951,741 천원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9,198,729 천원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3,823,162 천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660,000 천원 -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2,070,000 천원 - 흥동병원 경영혁신 지원 △720,000 천원 -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1,200,000 천원 - 광립요양병원 기능보강 △953,150 천원
보건환경연구원	21,611	47	48	18	15	15	<p>○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오염물질 검사 635,725 천원
어린이병원	12,695	14	14	9	4	1	<p>○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676,330 천원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운영 1,374,594 천원
은평병원	16,920	13	14	5	7	2	<p>○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병원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2,755,741 천원 <p>○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4,719,208 천원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1,336,527 천원
서북병원	18,521	12	10	6	4	-	<p>○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989,513 천원

마. 2026년도 세출예산(안) 기준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기준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5개로 시민건강국 총 세출예산 대비 54.6%를 차지함.
-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이 11.44%(906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 6.43%(509억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사업 5.36%(42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4.31%(341억원),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4.00%(317억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 3.74%(296억원), ‘국가 암검진’ 사업 3.57%(283억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사업 3.50%(277억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 2.90%(229억원), ‘농

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1.90%(150억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81%(143억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 1.64%(130억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1.35%(107억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34%(106억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사업 1.31%(104억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026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 기준 100억원 이상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실/국 2026년 총예산안 대비율(%)
1	스마트건강과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59,991	50,930	△9,060	6.43%
2	건강관리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30,064	29,609	△455	3.74%
3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33,341	34,123	782	4.31%
4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30,648	31,689	1,041	4.00%
5	건강관리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7,528	14,303	6,775	1.81%
6	정신건강과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23,568	27,684	4,116	3.50%
7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2,049	22,949	900	2.90%
8	정신건강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12,578	13,018	440	1.64%
9	정신건강과	심리상담 바우처	8,883	10,645	1,762	1.34%
1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50,429	42,479	△7,950	5.36%
11	감염병관리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국가예방접종 실시	77,325	90,594	13,269	11.44%
12	감염병관리과	국가 암검진	7,618	28,306	20,688	3.57%
13	식품정책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256	10,704	△552	1.35%
14	식품정책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6,161	15,036	8,875	1.90%
15	공공의료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8,683	10,358	1,675	1.31%

바.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신규사업은 총 7개 세부사업에 6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026년도 시민건강국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보건의료정책과			
1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주요내용 : 시민 운동 습관 형성 및 체력 등급 향상을 위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820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시민 ○주요내용 : 방문진료 의료기관 확대 및 지역사회에서 빨줄된 환자를 방문진료 가능 기관에 연계	410
건강관리과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대상 : 서울시민 ○주요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관기관 및 등록기관 협력체계 구성, 홍보 리플렛 제작 등	15
4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산모 ○주요내용 :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합리적 비용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시설선정) 공모를 통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개소 선정 -(운영지원) 시설비개선비(최대 5천만원), 운영비(이용산모 1인당 140만원) -(서비스) 표준화 산후조리 프로그램,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협력	2,800
정신건강과			
5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	○지원대상 : 마음투자지원서비스 사후평가에 따른 자살고위험 청소년 ○주요내용 : 민간심리전문기관 1:1 심층 심리상담 지원	80
감염병관리과			
6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모기감시장비(DMS)의 발생정보에 기반한 방제사업 시행	(x8) 8
은평병원			
7	은평병원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주요내용 : 전자의무기록(EMR) 도입 등 병원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756

3 주요사업 분석

1.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p.146>

가. 사업개요 및 예산안 현황

-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인증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운동 습관 형성과 체력 등급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에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 4억원,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사업 대시민 홍보비 1억 3,000만원 등 총 8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2026년도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예산안 현황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계	(x-) 0	820,000천원 (x-)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및 홍보콘텐츠 제작 = 90,000천원○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 30,000천원○ 매뉴얼, 보고서 등 교재 제작비 = 20,000천원○ 정책자문 등 운영비 및 참석수당 = 10,000천원○ 서울체력9988 만족도 및 성과 평가 = 60,000천원○ 사업 성과대회 = 80,000천원○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 = 40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신규 편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직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비(방송홍보) = 40,000천원○ 홍보비(뉴미디어) = 9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사업 대시민 홍보 등

나. 추진경위 및 예산안 편성목적

- 서울시는 지난 9월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 3·3·3·3!’을 발표한 바 있음. 이 계획은, ① 365일 운동하는 도시 ② 건강한 먹거리 도시 ③ 어르신 건강노화 도시 ④ 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과제를 통해 ’30년까지 운동실천율 3%p 올리고, 시민체력등급 3등급 향상, 건강수명 3세 연장을 목표로 함.

【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핵심과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핵심과제	세부사업	부 서
① 365일 운동하는 도시	○ 서울체력 9988	보건의료정책과
	○ 느림보 마라톤 대회	체육진흥과
	○ 생활체육시설 확충	체육진흥과
② 건강한 먹거리 도시	○ 통쾌한 한끼	식품정책과
	○ 우리아이 건강키움 존	식품정책과
	○ 가공식품 영양등급제	식품정책과
	○ 채식지도, 서울미래밥상	식품정책과
③ 어르신 건강노화 도시	○ 시립병원 노인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과
	○ 서울 건강장수센터	보건의료정책과
	○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④ 건강도시 디자인	○ 브레인핏 45 AI+	정신건강과
	○ 건강 쉼 벤치	건강관리과
	○ 걷고 싶은 계단	미래공간담당관 디자인정책과
	○ 손목닥터 9988 2.0 개편	스마트건강과

자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도자료(2025. 9. 10.), 2030년까지 건강수명 3세 ↑·운동 실천율 3%p ↑… ‘더 건강한 서울’ 만든다

- 서울시는 위 ① ‘365일 운동하는 도시’의 세부사업에, 상시 체력 측정이 가능한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25년 25개소), ’26년에는 50곳, ’30년까지 100곳 운영한다는 목표를 정함.

성과목표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체력인증센터 확대 (개소)	25	50	75	80	90	100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신규로 ‘체력인증센터’ 설치공간¹⁾을 확보한 15개 자치구 17개 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총 35억 4,8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²⁾으로 지원(1차: 2025. 9. 30. / 2차: 11월 중 예정)한 바 있는데,

【 서울형 체력인증센터 ‘서울체력9988’ 설치공간을 확보한 자치구 예산 지원 】

(단위 : 천원)

연 번	자치구	신청 (개소)	장소	개소 시기	산출내역	지원금액
	합계	17				3,548,000
1	종로구	1	명륜건강증진센터	'26.上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04,000
2	중구	1	을지 누리센터	'26.上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04,000
3	용산구	1	용산구 보건소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4	성동구					
5	광진구	2	군자건강센터 구민체육증진센터(구의역 세권청년주택)	'25.12. '26.上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416,000

1) 공간규격 : 성인, 노인 인증시 85m² 이상(전 연령 인증 시 159m² 이상)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신청 (개소)	장소	개소 시기	산출내역	지원 금액
6	동대문구	1	이문보건지소	'26.上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04,000
7	중랑구	1	아이맘플러스센터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	도봉구 보건소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11	노원구					
12	은평구	1	불광보건지소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13	서대문구	1	서대문구 보건소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14	마포구	2	마포365 구민센터 마포구민체육센터	'25.12.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424,000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신청 (개소)	장소	개소 시기	산출내역	지원 금액
19	영등포구	1	영등포구 보건소	'26.上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04,000
20	동작구	1	사당분소	'26.上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04,000
21	관악구					
22	서초구	1	서초구민체육센터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23	강남구					
24	송파구	1	송파구보건소	'25.12.	(계) 212,000 • 인건비: 103,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12,000
25	강동구	1	강동구보건소	'26.上	(계) 204,000 • 인건비: 95,000 • 운영비: 18,000 • 시설비: 91,000	204,000

- 금번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은 위 상시 측정이 가능한 자치구별 신규 ‘체력인증센터’ 확충 지원(특별조정교부금) 과는 별개로, 지난 10월 서울시가 자치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아래 ① <9988 서울체력장>과 같은 대규모 체험행사 개최 및 ②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증센터’ 10회(예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한 것임(다음 페이지 참조).

【 보도자료 '2,000명 승부욕 불태웠다…'3분이 30분 같아요" 한강 체력장 정체】



주1: <9988 서울체력장>은 대규모 체험행사를 위해 체력측정장비 5세트(국민체육진흥공단 2세트, 자치구 3세트)를 운영함.

주2: (체력측정) 유아, 유·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 6~7개 항목 / 성인(19~64세) 측정방법: 근력(상대의력),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20m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 종택1),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민첩성(10m왕복달리기, 반응시간 중 택1),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체공시간 중 택1)

주3: (체력인증) 체력수준별 문체부 장관 명의의 체력인증서 발급(1~6등급)

【 서울체력9988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추진계획(안)】

소요예산 : 400백만원 (찾아가는 서비스 10회 기준)

○ 인건비(전문인력) : 70백만원 ※ 주말근무 고려, 평일 근무비 2배 적용

- (건강운동관리사 12명 + 체력측정사 24명) × 10회

※ 1개 부스당 건강운동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4명 운영 (총 6개 부스)

○ 장비비 : 72백만원(측정기구 4세트 기준) ※ 행사 성격에 따라 차등 운영

- 자치구 장비임차료(연 18백만원) 고려

○ 기타 행사비 및 운영비 등 : 258백만원

※ 운영횟수 및 인력은 입찰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측정목표인원 : 연 4,000명 (= 400명 × 10회)

향후계획

○ 용역업체 선정(경쟁입찰) : '26.1.~2.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26.3.~

※ 자료: 보건의료정책과 제출자료

다. 분석의견

첫째, 향후 서울시는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확충(‘25년 25개소, ’26년 50개소, ’30년 100개소 운영목표)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사업 ‘국민체력100’과의 중복 문제, 두 사업 간 이해관계, 향후 자치구 설치 · 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주체 등 중장기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사업: 국민체력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력인증(사업명: 국민체력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

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위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³⁾으로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국가 지정 공인 체력인증기관)’을 신규로 운영할 지자체를 모집하고 있음.
- 2025년 2월 기준 전국에 73개소, 서울에 8개소가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수행하고 있음(다음 페이지 참조).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현황(서울) 】

구분	시·도	자치단체	센 터 위 치	운영주체	운영기관	비 고
1	서울	송파구	대표센터 (올림픽공원) 출장전담반	민간(공단직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4년~ 운영 ‘16년~ 운영
2		성동구	성동 공공복합청사	지방자치단체	성동구청	‘13년~ 운영
3		서초구	서초 구민체육센터	민간(기타)	서초구민체육센터	‘13년~ 운영
4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민간(공단·공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17년~ 운영
5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민간(체육회)	마포구체육회	‘16년~19년(민간) ‘20년~운영
6		중구	총무스포츠센터	민간(공단·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20년~운영
7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민간(공단·공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년~운영
8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공단·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20년~운영

자료: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기관 선정 공모 공고문

3) 지원사항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 지원방식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70%(142,548천원), 지방비 30%(61,09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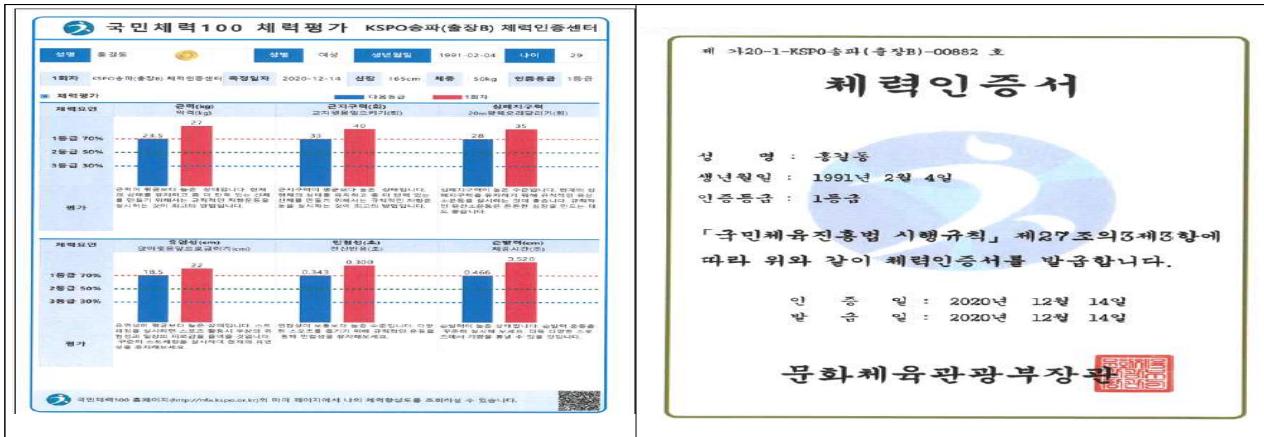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절차 】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인증	체력관리 지원
건강체력, 운동체력 등 6~7개 항목 측정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체력수준별 인증서 발급 (1~6등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오프라인 체력 진증교실 운영 카카오톡·네이버(인증서 확인) 등 온라인 운동상담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절차 및 방법 】



【 국민체력100 체력평가 결과지 및 체력인증서(1~6등급) 발급 】



자료: 국민체력100 사업소개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은 만 4세~6세 유아기와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체력수준 우수자에게 인증기준에 따라 위 체력인증서(1~6등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를 발급해 줌.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

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력인증기관(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만 발급됨⁴⁾.

- 현재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항공사 등 다수 기관에서 군입대, 채용 등에 활용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 국민체력100은 2012년 도입 이후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연간 170만명 이상, 누적 660만명이 참여한 국민체육진공단의 대표적인 공익사업임.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활용기관 】

활용기관		활용 세부기준(군입대, 채용 등)
중앙행정기관	교육지원청, 국가유산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병무청, 육군, 정부과천종합청사, 한국은행,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공무직(미화, 보안관, 당직 등), 군무원, 군사경찰특수임무대, 도선사(정년연장), 문화재 안전경비,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후보생), 전문특기병,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기능직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원경찰, 해양경찰 등
지방/기초자치 단체	강원도 원주시청, 경기도 고양시청, 경기도 양주시청, 경기도 의정부시청, 경상남도 창원시청, 경상북도 구미시청, 경상북도 김천시청, 경상북도 칠곡군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전라남도 강진군청, 전라남도 고흥군청전라남도 순천시청, 전라남도 신안군청, 전라남도 장성군청, 전라남도 해남군청	공무직(산불감시원, 청원경찰, 환경관리, 도로 및 하수관리 등)

- 4)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인증의 신청)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본인 확인 등) ④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 제8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미래한강본부, 부산교통공사, 서울대공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시 수도사업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식물원, 안산도시공사, 포항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공무직, 보안, 전기/철도, 감리원, 녹지관리, 미화, 주차관리, 청원경찰 등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파라타항공	항공승무원 등

자료: 국민체력100 홈페이지(국민체력100 활용기관, 보도자료('국민체력100 1천만명 참여'를 위한 대학생 경진대회 개최))

- (서울시 신규사업: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한편, 금번 서울시의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신규사업의 경우, 우선 서울시가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또 서울시장이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및 체력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체 사업은 아님.
- 앞서 설명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27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활용하여, 전 자치구에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임. 다만,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재원(시비100%,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신규로 설치 될 체력인증센터의 명칭을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라 브랜드화한 것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
- 즉, 동 신규사업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표>로 비교했을 때(다음 페이지 참조), 결국 사업의 명칭(서울체력9988 ↔ 국민체력100)과 예산지원의 주체(시비 100% ↔ 국비(70%), 구비(30%))만 다를 뿐,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는 국민체력100과 동일한 사업임(추진근거, 지정주체, 운영주체, 주요역할, 체력측정 절차 및 인증서 발급기준, 인력의 자격요건 등).

【 서울체력9988과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비교 및 분석 】

항 목	서울체력9988 (26년 서울시 신규사업)	국민체력100 (‘12년부터 정부 사업 추진)
추진배경	서울시민의 건강습관 형성과 건강수명 향상(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365일 운동하는 서울’ 핵심사업)	과학적인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통해 국민 체력 증진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체력인증기관 지정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예산	시비 100%(특별조정교부금)	국비(70%), 구비(30%)
운영주체		자치구(직영 또는 위탁운영)
주요역할	체력인증, 운동처방, 건강증진사업	체력인증,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사업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만 4세~6세 유아기와 만 11세 이상 국민
체력측정 절차	신청→방문→체력평가→운동처방 →사후관리 ※ 서울체력9988 :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예약 ※ 국민체력100: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체력인증서 등급별 발급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27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연령별(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급별(1~6등급) 상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인증서 발급
체력인증서 활용 예		군입대, 채용 등 제출서류
개인별 지급 인센티브	손목닥터 10,000포인트 (체력인증검사, 6개월 후 인증등급 향상 시 각 5,000p)	튼튼머니 제공 (연간 최대 50,000p)
근무인원 및 자격요건	3명 이상 (자격요건: 건강운동관리사, 체력측정사)	5명 이상 (자격요건: 건강운동관리사, 체력측정사)
체력인증기관설 치·운영 (예정) 현황	(‘25) 25개소 설치 (‘26) 25개소 추가 설치 (총 50개소 운영) ※ 25년 현재 15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2),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2),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7개 센터 설치 예정	전국 74개소 서울권역 8개소 ※ 송파(국민체육진흥공단 직영(대표센터, 출장전담반), 7개 자치구(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강북구) 운영 중

- 그렇다면 이미 2025년 11월 기준 서울시에 7개 자치구(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강북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으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를 설치·운영(국비 70%, 구비 30%) 중에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6년에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인증기관’을 계

속 확대(26개소 이상)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 2026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 현장설명회 개최 안내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 현장설명회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3.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 체력측정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미에 관련하여, 2026년도 체력인증기관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체력100 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2026년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선정 · 공모 설명회 나. 일시/장소 *상세주소 [별첨1] 참조			
일 시	시 간	장 소	비 고
2025.9.29.(월)	13:30~15:00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비즈홀	수도권
2025.10.15.(수)	13:30~15:00	아산직영체력인증센터	충청·강원권
2025.10.24.(금)	13:30~15:00	광주직영체력인증센터	호남권
2025.10.28.(화)	13:30~15:00	대구직영체력인증센터	영남권
다. 참석대상 : 2026년 국민체력100 신규개소를 희망하는 대상기관 담당자 라. 주요내용 ○ 국민체력100 사업 소개 및 2026년 국민체력100 신규 선정 · 공모 절차, 기준, 일정 등 안내 ○ * 2026년 신규 체력인증기관 모집 개소 : 26개소 이상(예정) ○ 직영체력인증센터 현장견학			

○ 서울시가 시민들의 운동 습관 형성과 체력 등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① 국민체력100 기존 서울지역 체력인증센터(7개 자치구)와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들에 대한 지방비 ‘보조’가 아닌 ② 서울시 자체재원 100% 지원(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사업(국민체력100)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① 국민체력100 운영예산: '25년(국비)(70%), 구비(30%))
→ '26년(국비)(30%), 구비(70%) 변경 예정
- ② 서울체력9988 운영예산 : 시비(100%)

-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9월말 서울시에 ① 국민체력100 기준 서울지역 체력인증센터(7개소)의 신규 체력인증센터(서울체력9988)로의 전환 또는 통합운영은 불가, ② 향후 체력인증기관 협판 제작 시 국민체력 100 아래 지자체 브랜드 병기 가능, ③ 체력인증센터 보도자료 작성 시 국민체력100 사업과의 협업 관계를 필수로 명시하라고 안내한 바,

【 국민체력100·서울체력9988 체력인증기관 개소 준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신 서울특별시장
(경유) 스마트건강과, 보건의료정책과

제목 국민체력100·서울체력9988 체력인증기관 개소 준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체력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추진중인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 연계 체력인증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원활한 체력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4. 체력인증기관 개소 준비 관련 유의사항

가. 국민체력100, 서울체력9988 명칭 사용 관련

- 체력인증기관 협판 제작 시 「국민체력100」 아래 지자체 브랜드 병기 가능

예시①	예시②	비고
국민체력100 서울체력9988 ○ ○ 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 서울체력9988 ○ ○ 센터	국민체력100 70%이하 크기의

- 체력인증기관 운영·홍보 관련 BI 제작 시 「국민체력100」 우전 병기
 - (예시) 국민체력100 × 서울체력9988 ○ ○ 센터

나. 체력인증기관 운영기관 지정 관련

- 체력인증센터 운영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 지정 원칙
 - 국민체력100 기준 서울지역 체력인증센터(7개소*)의 신규 체력인증센터(서울체력9988)로의 전환 또는 통합운영 불가
 - * 서울권 체력인증센터 :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서대문구, 종구 체력인증센터

다. 언론보도 등 대외 홍보 관련

- 체력인증센터 보도자료 작성 시 국민체력100 사업과의 협업 관계 필수 명시

- 향후 서울시는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확충('25년 25개소, '26년 50개소, '30년 100개소 운영목표)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사업 ‘국민체력100’과의 중복 문제, 두 사업 간 이해관계, 향후 자치구 설치·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주체 등 중장기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종전 유사 사업) 참고로 지난 2025년 2월 서울시가 수립한 「2025년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계획」에 따르면, '26년까지 전 자치구에 마음상담소를 확대 설치(1개 센터당 2억 지원)하여 심리상담 진입장벽 해소 및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음.

【 2025년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계획 】

II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설치부터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교육 지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1자치구 1마음상담소 운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 제고
-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특화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

□ 사업 체계도

마음상담소 전 자치구로 확대 ('24년) 9개구 11개소 → ('26년) 25개구 27개소		
목표	주요 과제	서비스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 및 대기공간 배치와 풍선 최적화 -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및 인테리어 구성 	상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사 채용요건 및 역할 설정 -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자문	마음상담소 설치·운영 자문단	
연계 기관	상담전화 (1577-0100) → Wee센터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정신건강 복지센터 → 민간 상담기관	
후원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 그러나 현재까지 자치구 마음상담소는 14개구 16개소만 설치·운영(예정 포함) 중에 있고, 서울시는 금번 2026년 본예산안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사유로 동 사업(사업명: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종료 및 미편성('25년 최종예산: 7억 4,200만원)했다는 점도 참고하여, 향후 서울시의 '중장기계획' 점검이 필요함.

【 자치구 마음상담소 현황 ('25.10월말 기준) 】

연번	시설명	자치구	시작연도
1	더 가까이 심리상담실	구로구	2020년
2	심리상담 마음‘쉼’	금천구	2018년
3	성북구심리지원센터	성북구	2022년
4	힐링캠프 상담실	영등포구	2013년

5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은평구	2014년
6	청소년 마음건강센터 '마음온'		2023년
7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1호)	중랑구	2018년
8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2호)		2024년
9	사이쉼	강남구	2021년
10	마음상담실	관악구	2021년
11	마음상담소	서대문구	2022년
12	마음상담소	용산구	신규설치
13	마음상담소	마포구	신규설치
14	마음상담소	강동구	신규설치
15	마음상담소	동대문구	신규설치
16	마음상담소	양천구	신규설치

주1: 서울시 지원([신규설치 5개소](#)(용산,마포,강동,동대문,양천), [기능보강 1개소](#)(관악) 선정)

주2: **미설치자치구 11개구**(종로,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자료: 정신건강과 제출자료(2025. 11. 20.)

둘째, 서울시 자체 개발 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모델’이 기존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시스템’ 보다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또 허리 디스크 등 신체질환자 중 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향후 서울시장 명의로 발급될 체력인증서의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모델 도입 필요성) 지난 25년 11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력인증 기준 ‘국민체력100’은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허리 디스크 등 신체질환자들은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고, 이에 서울시가 신체기능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서울형 체력인증제도’를 개발·운영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함⁵⁾.
- 물론,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은 신체활동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5) 보도자료(2025. 11. 14.) “[단독]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모델 나온다” 국민체력100 보완해 구축;'손목닥터9988' 등과 연계

기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체력측정을 하기 전 측정이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측정을 거절할 수 있어⁶⁾, 허리 디스크 등 일부 신체질환자들이 측정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순 있겠음.

- 그러나, 서울시 자체 개발 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모델’이 기존의 ‘국민 체력100 체력인증 시스템⁷⁾’ 보다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또 허리 디스크 등 신체질환자 중 서울시민 전용 ‘체력 인증’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향후 서울시장 명의로 발급될 체력인증서의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은 기존 국가사업(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장애인체력인증센터)과 향후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개소 예정인 자치구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체험행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4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할 필요성은 적어 보임

-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은 기존 국가사업인 국민체력100 전국 출장전담반(총 6개소, 서울 2개소)과 서울권역 7개 자치구(성동구, 서초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강북구)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또 서울시 장애인체력인증센터(송파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자, 장애인, 직장인,

6)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인증의 신청) 제4조(본인 확인 등) ④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7)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시스템은 지난 2025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체력 측정과 인증,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전 과정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음

※ 자료: 2025년 11월 12일 보도자료(“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대학생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무료’ 제공(조건: 20인 이상)이 가능하고,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 】

	
(동작체력인증센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출장 체력측정	(서울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서초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출장체력측정
	
(송파체력인증센터 출장A) 코오롱 인더스트리 대산공장 출장 체력측정	(성동체력인증센터) 성신여대 학군단 출장 체력측정

자료: 국민체력100 홈페이지(<https://nfa.kspo.or.kr>), 센터소식.

자료: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nfa.koreanpc.kr/>), 포토갤러리.

- 또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5억 4,800만원을 지원받아 연말부터 개소 예정인 15개 자치구 17개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체험행사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4억 원의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도 적다고 생각됨.

2.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p.164,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내 신규 편성>

가. 현황

- 의료비 후불제는 취약계층이 목돈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시립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시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은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내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 2026년도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 내 ‘의료비 후불제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계	(x-) 284,000	(x-) 197,050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망병원 진료비 평가운영회 수당 150,000원*7명 = 1,050천원 ○ 의료비후불제 홍보물 및 매뉴얼 인쇄 20,000원*2,000부 = 40,000천원
		증감사유
	○ 안전망병원 평가운영회 수당 지급비용 및 의료비 후불제 홍보비 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정책사업 업무추진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등 진료비 지원 1,200,000원*45명 = 54,000천원 ○ 안전망병원 사업 지원 33,000,000원*2개소 = 6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망병원 사업 지원 33,000,000원*2개소 = 66,000천원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사유	
	○ 서울의료원의 취약계층 진료비는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으로 지원	
민간위탁금	○ 보라매병원 진료비 1,200,000원*70명 ○ 동부병원 진료비 750,000원*80명 ○ 서남병원 진료비 1,000,000원*20명	= 84,000천원 = 60,000천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 각 시립병원의 취약계층 진료비는 시립병원 손실보전금으로 지원
		○ 의료비후불제 이차보전금 2,500,000원*400명*0.08 = 80,000천원
이차보전금		증감사유
	○ 추계치 적용 반영, 대출금(250만원)*지원대상(400명)*대출금리(8%)	

나. 분석의견

첫째,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서울시의 ‘상환 리스크관리 방안’ 점검 필요

-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① 서울시는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② 충청북도는 서울시 대표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음(다음 페이지 참조).

【 서울-충북 업무협약서 】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후불제 추진을 위한
서울시 - 충청북도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충청북도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병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용자를 지원해 주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서울시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서울시 의료비 후불제 도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기로 한다.

1. "서울시"의 역할

- 가. 서울시-충청북도 및 의료단체 등 참여 기반 공동 TF 구성·운영
- 나. 사업대상자, 지원범위 등 구체적 사업(안) 마련

2. "충청북도"의 역할

- 가. TF참여 및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노하우 및 자료 공유
- 나. 의료단체 및 금융권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자문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은 협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등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각 서명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24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김영환

- 위 협약(2024. 12. 23.)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① 의료비 후불제 1차 TF회의(2025. 1. 21.), ② 전문가 자문회의(2025. 5. 7.), ③ 유관기관 업무협의(2025. 5. ~), ④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범사업 추진 시 협의 제외/2025. 7. 22.) 등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26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충청북도가 2023년 1월 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도민 중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산모를 대상으로 위 14개 질환의 수술 및 시술에 소요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50~300만 원을 금융기관이 대납하고,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5세 이상인 자 ③ 차상위계층 ⑤ 국가유공자 ⑦ 산모 </div>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④ 장애인 ⑥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div> </div> <p>※ 단 치료목적의 치아교정비 지원 특례 대상자는 ②~⑤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p>	
대상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플란트 식립, 치아교정, 틀니 ■ 척추 ■ 암 ■ 호흡기 ■ 골절 ■ 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 심혈관·뇌혈관 ■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대출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대상질환 수술(시술)로 인한 3개월 이내의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대 등 ■ 1인당 1회 50~300만 원 <p>※ 단, 치아교정 특례 적용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p>	
대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 대출일~최대 3년 ■ 상환방식 : 대출일 익월부터 매월 분할상환(무이자,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자료: 충청북도(2025. 7.), 의료비후불제 성과분석 연구용역, p.21

- 충청북도는 대출에 따른 이자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이자 조건의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또 이자보전 외에도 연체 발생 시 충청북도는 일정 요건 하에 미상환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채권관리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음⁸⁾.
- 이러한 충청북도의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서울시가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서울시는 이미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지원사업⁹⁾ 외에 추가로 ① 안전망병원, ②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장기체납)나 의료수급권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거나, 후원금 등 재원 활용 및 감면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해 왔음.

【 서울형 기존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 】

구분	안전망 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시범사업(안)
운영 개요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이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제공	시립병원 퇴원 환자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합 연계하여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융자(이자)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적기 치료 도모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장기체납) ② 의료수급권자 ③ 외국인(근로사실이 확인)	① (지역사회→시립병원) 지역 관계기관 의뢰 또는 자체 발굴한 *의료취약계층 ② (시립병원→지역사회) 복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8) 위 연구용역 보고서, p.24

9) 현재 국가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① 긴급복지 지원제도,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③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④ 암환자 의료비 지원, ⑤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⑥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비 지원, ⑦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등이 있음.

구분	안전망 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시범사업(안)
	되는 미등록외국인) ④ 노숙인 ⑤ 거주 불명자 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합적인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립병원 퇴원환자 *의료급여·차상위계층·행려 노숙환자 등	
지원 내용	입원(수술, 종증질환), 외래, 검사 등으로 발생한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	MRI, CT 등 검사비용과 외래 및 입원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일부 지원(후원금 또는 감면 등)	13개 질환 임플란트(틀니 포함),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충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지원 방식	(1차 진료) 민간병원(무료진료)에서 진료 후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시립병원에 의뢰 (2차 진료) 시립병원은 민간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를 진료 후 안전망병원 사업비로 본인부담금 처리	(재원) 병원후원금, 지정기탁금, 위기긴급지원기금 등 (절차) 건강돌봄 대상자 적격 성심의 후, 의료적 지원에 대해 공적재원을 우선 검토하되 활용이 불가하거나 한도 초과 시 병원후원금 등 재원 또는 감면 처리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질환의 수술(시술)과 관련된 의료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 후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최장 3년), 市에서는 이자 지원
수행 기관	민간병원 :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시립병원 :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시립병원 9개소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市에서 직접 수행 - (참여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참여 금융기관 협약 예정

- 그런데,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제도나 사업의 ‘확대’가 아닌, 공적 대출을 통해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도입 시, 서울시의 ‘상환 리스크관리 방안’도 점검이 필요함.
- 현재 기시행 중인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상환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자(1,401명) 중 3.2%(45명)로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환 실패 시,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록 등 동 사업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잠재함.

-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32.3%는 의료비 후불제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¹⁰⁾,
- 의료비 후불제 1차 TF회의(2025. 1. 21.)에서 충북 의료비후불제팀장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채권 추심¹¹⁾ 등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¹²⁾.

【 충청북도 모델과 비교 및 분석 】

지자체 항목	충청북도	서울시(안)
추진근거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 (사업시행) '23.1.9.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개정안 제출(제332회 상정→ 보류)
운영조직	道 직영 (1팀 4명) * 향후 민간위탁 추진 검토	市 직영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질환	14개 질환 임플란트 식립, 치아교정, 틀니,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 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충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13개 질환 * 치아교정 외 동일
대출한도	50만원 ~ 300만원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복지부 협의 중	50만원 ~ 500만원
참여병원	289개소 * 종합병원 13, 병원 21, 의원 255	4개소 * 종합병원 4
기타	<p>【충북 의료비후불제 분석('25.6월말 기준)】</p> <p>▶ (대출실행) 77.7% (실행 1,401명 / 신청 1,80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율 3.2% (총 45건 ; 대위변제 23건, 1월 이상 미납 22건) ▶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플란트(75.0%, 1,354명) > 치아교정(7.2%, 131명) > 척추(5.2%, 94명) 순 - 청주(56.2%, 1,014명) > 충주(14.5%, 263명) > 음성(9.7%, 176명) 순 	

10) 위 연구용역 보고서, p.124

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TF 회의(1차) 결과

둘째,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 이행 필요

- 아울러 서울시가 내년도에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¹³⁾,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 동의¹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지난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동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3034)」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음을, 금번 예산안 예비심사(’25. 11. 28. 예정)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34) 】

- 제출자 및 제출일 : 시장, 2025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상정일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9. 3.)
- 위원회 주요 심사의견
 - 오금란 위원 : 충북에서 했던 우수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를 제안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 여기 보면

13) 투자심사 심의(2025. 10. 21.) 결과 : 조건부(조례안 동의안 통과)

14) ※ 市에서 미상환금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필요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우리가 대출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주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충북의 실효성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 강석주 위원 :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만약에 의료비를 융자받았을 때 (중략) 전혀 지금 경제능력이 없는데 회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 도문열 위원 : 지금 충북도와 MOU를 체결을 해서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좀 더 폭넓고 촘촘한 그런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의료 혜택이 적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대상자도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이라고요, 대상도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되었어요. 이런 사업을 굳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가져올 이유가 있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 보류

- 만약 위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예산 1 억 2,000만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3.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p.195>

가. 현황

- 서울시가 스마트워치와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약칭: 손목닥터9988)’은 ’25년 9월 말 기준, 누적 248만명이 참여하고 있음.

【 손목닥터9988 참여자 모집 현황 】

구분	'21년	'22년	'23년(1차모집)	'23년(2차모집)	'24년	'25년 (9월 말 기준)
신규 참여자 수	5만 명	18만 명	15만 명	7만 명	118만 명	85만명
누적 참여자 수	5만 명	23만 명	38만 명	45만 명	163만 명	248만명

자료: 2025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자료, p.954.

-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 사업의 내년도 참여자(350만명 예상)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예상 참여자 350만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비로 기타보상금에 49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50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다음 페이지 참조).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손목닥터9988 사업은 건강목표 달성을 수행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급하고 있음.

【 2026년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0,374,143	(x-) 59,990,542	(x-) 50,930,490	(x-) △9,060,052	(x-) △15
사무관리비	(x-) 1,365,544	(x-) 1,385,544	(x-) 1,391,670	(x-) 6,126	(x-) 0
공공운영비	(x-) 0	(x-) 0	(x-) 4,320	(x-) 4,320	(x-) 100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x-) 10,000	(x-) 10,000	(x-) 10,000	(x-) 0	(x-) 0
기타보상금	(x-) 28,768,599	(x-) 58,364,998	(x-) 49,314,500	(x-) △9,050,498	(x-) △16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x-) 230,000	(x-) 230,000	(x-) 210,000	(x-) △20,000	(x-) △9

주: 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은 지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연말 278만 예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① 기타보상금에 296억원을 증액하고, 또 ② 예비비로 18억원을 사용한 바 있음.

자료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12.

자료2: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2025. 9.), p106.

나. 분석의견

**첫째, 손목닥터9988 사업의 예산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¹⁵⁾.

15) 행정안전부(2025. 7.)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70.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그런데 손목 닥터9988 사업은, ① 조례에 명시된 대상자(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외에 ‘서울 소재 대학(원)생’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 포인트를 지급해 왔음.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우려를 하였으나¹⁶⁾ 서울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고, 또 ②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사안이므로,
-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우선 관련 ① 조례의 개정, ②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예산액(493억 원)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① 조례 개정 필요) 서울시는 그간 현행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손목 닥터9988 사업 참여자(18세 이상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대학(원)생)들에게

16)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2025년 9월 3일(수))」

- 도문열 위원 : 우리가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법령과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는 이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조례를 사업 운영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죠?
- 시민건강국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 도문열 위원 :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 시민건강국 : 처음부터 조례를 완벽하게 해 놓고 대상을 했으면 좋은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늘리려는 취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이게 입법상 조례 규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사후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조례보다 더 폭넓게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문열 위원 :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지 실제로는 조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업 참여실적 등에 따라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원해 왔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 그런데 현행조례 제9조제3항에는 비용의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 소재 대학(원)생’들에게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조례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¹⁷⁾.

17)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2025년 3월 5일(수))」

- 이병도 위원: 손목다터9988, 이 신체활동에 관련된 사업만 대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꽉넓게 규정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플러스 우리 서울시 직장인까지. 이게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례가 시민 플러스 서울시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고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시민건강국: 서울거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 이병도 위원: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 조례를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시민이 아니라 조례에 서울 소재 시민 플러스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없는 대학생이나 자영업자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조례 체계랑도 맞지 않

-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지난 2025년 8월 13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손목닥터9988 사업은 조례상 명시된 대상자(서울시민 및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외에 서울 소재 대학생과 자영업자 등 서울이 생활권인 사람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한 것에 위법 소지가 없는지” 질의한 바 있음.
- 해당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검토의견)에 따르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더라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를 참여대상으로 정한 조례에 위반하여 ‘주민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생’을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조례 위반 사실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권 침해 주장, 시민단체나 언론에 의한 문제 제기 등에 의하여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 소재 대학생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원)생’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 현행조례가 개정

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시민건강국: 일단 대학생이 빠져 있고요…….
- 시민건강국: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고려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원 위원: 학생을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빼든지 이런 거죠.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뺀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문제가 없고, 대학생을 넣는다고 그러면 조례에 그 부분이 없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 시민건강국: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신동원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될 필요¹⁸⁾가 있음.

- 이와 관련, 금번 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동 사업 예산안 관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3305)」이 발의¹⁹⁾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25. 11. 28. 예정)를 앞두고 있는데, 금번 예산안 예비심사('25. 11. 28. 예정) 시, 동 개정안의 심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② 예산 사전절차 이행 미준수)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2년(사회보장제도 신설)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와 협의(=서울시민)되지 않은 서울시민 외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 및 대학생' 19만 5천여 명(25년 10월 31일 기준)을 동 사업 대상에 포함, 포인트를 지급해 옴(다음 페이지 참조).

18)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회의록(2025년 9월 3일(수))」

- 도문열 위원 : 우리가 어떤 법령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법령과 조례에 준해서, 법령과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행 조례는 이런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불일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조례를 사업 운영에 맞 게 고쳐야 되겠다 지금 말씀이죠?
- 시민건강국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 도문열 위원 :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 시민건강국 : 처음부터 조례를 완벽하게 해 놓고 대상을 했으면 좋은데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늘리려는 취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까지 포함해서 하다가 이게 입법상 조례 규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사후적으로 치유 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조례보다 더 폭넓게 적용을 해 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문열 위원 :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이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사업 운영 간의 불일치지 실제로는 조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9) ■ 제안이유

- 이번 개정안은 현행조례에 누락 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 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 손목닥터9988 사업의 ‘지원대상’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내역 】

연번	유형	협의 요청일자	지원대상 협의 요청내용	검토결과
1	신설	2021.9.28. (서울시 → 보건복지부)	만 20~64세 서울시민(매년 5만명)	2022.1.12.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 서울시)
2	변경	2022.11.15. (서울시 → 보건복지부)	만 19~64세 서울시민 → 만 19세 이상	2022.11.17.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 → 서울시)
3	변경	2024.8.1. (서울시 → 보건복지부)	19세 이상 서울시민 → 10세 이상 서울시민	2024.12.4. 조건부 협의완료 ²⁰⁾ (보건복지부 → 서울시)
4	변경	2025.7.15. (서울시 → 보건복지부)	10세 이상 서울시민 → 10세 이상 서울시민, (추가)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자영업자 포함) 및 대학(원)생	2025.11.13. 조건부 협의완료 ²¹⁾ (보건복지부 → 서울시)

자료: 의원요구자료(요구번호 2638)

【 손목닥터9988 사업 서울시민과 서울시민 외 가입자 현황('25. 10. 31. 기준) 】

(단위: 명)

구분	합계	'21~'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2,550,813	230,000	217,921	1,182,283	920,609
서울시민 (비율)	1,907,740 (74.8%)	212,994 (92.6%)	197,684 (90.7%)	970,223 (82.1%)	526,839 (57.2%)
서울시민 외 (비율)	195,269 (7.7%)	17,006 (7.4%)	20,237 (9.3%)	114,456 (9.7%)	43,570 (4.7%)
자영업자	25,253	726	982	12,727	10,818
직장인	158,257	15,291	18,207	95,105	29,654
학생	11,759	989	1,048	6,624	3,098
미인증 (비율)	447,804 (17.6%)	-	-	97,604 (8.3%)	350,200 (38.0%)

자료: 의원요구자료(요구번호 2713)

20) ■ 주요내용

- 향후 사업 변경 시 미성년자 포함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할 것
- 활동 보상의 사용처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수단 설계·관리 권고
- 실제 건강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션 설계 및 제공, 도덕적 해이 소지 방지 체계 마련 필요

21) ■ 주요내용

- 기 조건부 협의완료*에 따라 대상자별 사업 효과성** 검토를 위하여 사업시행일로부터 2년간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판단(「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pp.53~54)

* 미성년자 포함 사업성과 제출 조건부 협의완료(' 24.12.4.)

** 미성년자, 대사증후군, 치매예방·관리, 금연 등 대상자 유형별로 건강검진결과 등을 활용한 구체적 건강상태 개선 효과 여부

- 국가 유사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 대상자 간 중복지원 방지방안 마련 후 추진현황*을 사업성과평가 결과 제출 시까지 분기별로 복지부에 공유하고,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pp.53~54)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oT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보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등

** 대상자 분리 관리 현황 관련 통계자료 등

【 손목닥터9988 사업 서울시민과 서울시민 외 포인트 적립 현황('25. 10. 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1~'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132,410	2,067	13,471	60,850	56,022
서울시민 (비율)	117,359 (88.6%)	1,898 (91.8%)	12,276 (91.1%)	55,093 (90.5%)	48,092 (85.8%)
서울시민 외 (비율)	10,649 (8.0%)	169 (8.2%)	1,195 (8.9%)	5,209 (8.6%)	4,076 (7.3%)
자영업자	995	13	41	341	600
직장인	9,308	151	1,111	4,701	3,345
학생	346	5	43	167	131
미인증 (비율)	4,402 (3.3%)	-	-	548 (0.9%)	3,854 (6.9%)

자료: 의원요구자료(요구번호 2713)

- 이미 복지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서울시는 지난 2025년 7월 15일에서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²²⁾를 요청하고, 복지부 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25. 10. 31.)함.
- 비록 금번 예산안 예비심사('25. 11. 28. 예정) 전, ‘협의완료(조건부)’가 결정('25. 11. 13.)되었으나, 이러한 2026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의회 제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²³⁾ 및

2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

23)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

동 법 위임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²⁴⁾에 명시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동 사업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우선 관련 ① 조례의 개정, ②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미준수로 이미 지적받은 전례가 있음²⁵⁾.

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4) 행정안전부(2025. 7.)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70.

아. 예산 사절차 이행의 원칙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위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임.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 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훈령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가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그 “법령”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예산편성운영기준과 같은 법규 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례 등 참조).

25)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2022년 11월 28일(월))」

- 김경 위원 : 11월 1일 이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그때 참여를 하셨었고요. 이게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전절차 이행 원칙 준수하셨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 시민건강국 : 오늘 예산하러 오기 전까지는 다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 김경 위원 : 아니요, 먼저 그것을 심의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액 49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체가 없어, 제출된 예산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손목탁터9988 사업은 아래와 같이 매년 누적 참여자(신규참여자+연속참여자)가 늘어날수록('23년 누적 45만명 → '25년 10월 말 기준 누적 255만명) 포인트 지급 예산('23년 140억원 → '25년 582억원)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임.

【 손목탁터9988 사업 연차별 신규 모집인원 및 예산 현황('25. 10. 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1차)	'22년(2차)	'23년(3차)	'24년(4차)	'25년(5차)	합 계(누적)	
모집 대상	19~64세	19~75세	19세 이상~	18세 이상~	-		
※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및 대학생 포함							
신규 모집 (누적)	5만명	18만명 (23만명)	22만명 (45만명)	118.2만 명 (163만)	목표치 현재 (10월 31일)	115만명 (278만) 92만명 (255만)	
예산 (시비 100%)	최종예산 (본예산) (포인트) (워 치) (시스템) (상담센터) (홍보 등)	4,475 (-) 1,500 2,500 - 375 100	12,855 (3,522) 1,000 6,500 2,883 1,802 670	27,018 (27,018) 14,000 7,500 2,447 2,349 721	29,653 (18,197) 23,184 2,500 1,920 1,423 626	62,805 (33,188) 58,285 - 2,814 1,171 535	136,806 (81,925) 97,970 19,000 10,064 7,120 2,652

자료: 의원요구자료(요구번호 2713)

- 그렇기 때문에 동 사업의 '26년도 참여자 포인트 예산안(493억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26년도 신규참여자 수와 연속참여자 수를 각각 추계하고 ② 이들이 실제 연내 적립 및 ③ 사용할 수 '포인트별' 예산액 추계에 기반한 편성이 필요한데,

- 금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액 49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체가 없어, 보다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6년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운영 사업 예산안에 기타보상금 산출근거 】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기타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28,768,599천원 - (신규참여-신체활동) 73,000원*1,430,000명*28%*81%*60% = 14,205,392천원 - (신규참여-기타) 27,000원*1,430,000명*20%*60% = 4,633,200천원 - (연속참여-신체활동) 54,750원*1,070,000명*28%*81%*60% = 7,971,907천원 - (연속참여-기타) 15,250원*1,070,000명*20%*60% = 1,958,100천원 <p style="text-align: right;">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9,314,500,000원 = 49,314,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수(350만명)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금액 증액 	

주: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예산은 287억 원이었으나, 지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연말 278만 예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① 기타보상금에 296억 원을 증액하고, 또 ② 예비비로 18억 원을 사용한 바 있음.

자료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12.

자료2: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2025. 9.), p106.

-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2025년 9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수정제출)>에는 ‘손목닥터9988’은 지속적인 건강생

활 습관 형성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써, ‘행사성 챌린지’ 위주의 타 걷기 사업(‘3·6·9 걷기 챌린지(인천)’)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변경) 협의요청서 내용 발췌 】

2.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증진 목적의 타 걷기 사업'과의 중복성 방지방안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건강증진 목적의 걷기 사업은 서울에서만 시행 중

▶ 기후행동 기회소득(경기도) : 탄소중립 목적으로 건강증진 목적이 아님

▶ 3·6·9 걷기 챌린지(인천) : 행사성 챌린지로 지속적인 건강생활 습관 형성 유도를 위한 손목닥터9988과 다름

②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업 사업 : 일부 자치구(중구)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시행중이나, 시스템 여건상 시민의 중복가입을 제한하기 어려움 ⇒ 향후 정책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통합방안 검토 예정

※ 서울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손목닥터9988’과 사업내용 및 방법 등이 달라 손목닥터9988 제외대상이 아님

자료: 협의요청서 수정제출_250917

- 동 사업 참여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24년~'25년 이벤트 특별포인트 지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동네 민방위 대피소 찾기’에 5,990만원, ‘친구 추천 이벤트’에 2억 2,123만원의 특별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서울시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습관 형성 유도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성 챌린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행사성 챌린지’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다음 페이지 참조).

【 '24년 이벤트 특별포인트 지급 현황 ('24.12.31 기준)】

연번	주제	참여자(명)	지급 포인트(원)	이벤트 내용
	계	1,687,673	930,552,600	
1	활동 포인트 3배 (1.8.~1.14./7일간)	962,514	385,005,600	1일 활동포인트 200P 또는 8천보 달성시 1일 400P, 7일 최대 2,800P
2	새해맞이 2만4천보 걷기 (1.15.~1.19./5일간)	191,263	191,263,000	5일간 누적 걸음 2만4천보 달성시 1,000P 제공
3	서울광장스케이트장 (1.19. 18:00~20:00)	1,800	1,800,000	8천보 완료 인증시 1,000P 제공
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4.12. 09:00~13:00)	1,300	1,300,000	현장 방문자에 1,000P 제공(GPS) (장소 :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5	서울 러너스페스티벌 (4.20. 12:00~20:00)	3,700	3,700,000	현장 방문자에 1,000P 제공(GPS) (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
6	우리동네 민방위 대피소 찾기 (4.29.~5.8. / 10일간)	59,900	59,900,000	대피소 인증 및 댓글 작성시 1,000p 제공
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5.16. 12:00~19:00)	4,103	4,103,000	현장 방문자에 1,000P 제공(GPS) (장소 : 뚝섬한강공원 일대)
8	친구 추천 이벤트 (3.25.~5.31.)	408,330	221,236,500	추천인 : 500P/명, 최대 2,000P 가입자 : 500P, 최대 2,000P
9	서울푸드 페스티벌 (6.1. 12:00~18:00)	3,320	3,320,000	현장 방문자에 1,000P 제공(GPS) (장소 : 한강잠수교 일대)
10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6.1.~6.2.)	8,620	8,620,000	현장 방문자에 1,000P 제공(GPS) (장소 : 뚝섬한강공원 일대)
11	서울둘레길 (5.1.~12.31.)	34,143	40,624,500	1코스당 500P 제공 (최대 10,500P)
12	러너스테이션 개관기념 (5.21.~6.20.)	7,680	7,680,000	여의도 코스 1,000P 제공(GPS)
13	100만 참여 기념 (6.18. 10:00~20:00)	1,000	2,000,000	무동력 트레드밀 챌린지 참여자 (방문 2,000명) 2,000P 제공 (장소 : 광화문광장)

자료: 스마트건강과 제출 자료(2025. 11. 06.)

(다음 페이지 계속)

【 '25년 이벤트 특별포인트 지급 현황 ('25.10.31 기준)】

연 번	주 제	참여자 (명)	지급 포인트 (원)	이벤트 내용
	계	9,202	9,885,000	
1	시정 홍보 콘텐츠 서울마불 현장 이벤트 ('24.11.15.~11.17./3 일간)	90	90,000	손목닥터 회원 중 서울마불 콘텐츠 완주 시 1,000P 제공
2	쉬엄쉬엄 한강축제 (5.30.~6.1./3일간)	3,553	3,553,000	손목닥터 회원 중 쉬엄쉬엄 3종 경기 완주 시 1,000P 제공
3	손목닥터 200만 행사 (6.14. 08:00~14:00)	5,124	5,124,000	남산 둘레길 챌린지 완주 시 1,000P 제공
4	확찐살, 살빼기 행사 (10.10. 10:00~17:00)	435	594,000	체력 측정 시 포인트 제공 사전신청자 2,500P/ 현장참가자 1,000P
5	9988서울체력장 행사 (10.26. 10:00~17:00)	424	524,000	체력 측정 시 1,000P 제공 ※ 확찐살, 살빼기 챌린지 참여자 (10.10. 행사 사전신청자)의 경우 2,500P 제공

자료: 스마트건강과 제출 자료(2025. 11. 06.)

4.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사업별설명서 p.540>

가. 현황

-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시설퇴소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초기 정착지원금(1인 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서울시 지원주택²⁶⁾ 입소예정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 2026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지원주택 물량 확보 규모(15호실)에 따라 지원 대상을 감소(15명)하여,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2억 2,500만원을 편성함.

【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정착금 지원 15,000,000원*25명 = 37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정착금 지원 15,000,000원*15명 = 225,000천원 <p style="text-align: center;">증감사유</p> <p>SH 주택 물량 확보 규모(15호실)에 따라 지원대상 감소(15명)</p>

26)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사업명)

- 사업대상: 만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서울시민)
- 추진방법: 사업자 공모를 통한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사업내용: 만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을 준비하지만 주거마련이 어려운 대상에게 지원주택 제공(개인이 직접 계약,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지원내용: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과금 본인부담)
- 26년도 예산안: 1,510,616천원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업명, 사회보장 제도 협의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지난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²⁷⁾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2024년 3월 19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가 결정됨.

【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내역 】

- 협의 요청일 : 2023년 6월 26일
-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주거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차별 받지 않고 균등한 복지를 누릴 법적 근거 생성
- 지원대상
 - 서울시민으로 정신장애인에 등록된 대상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
 - 선정기준: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 준비가 결정된 자 (시설퇴소자 우선 선정)
- 선정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또는 퇴소예정자
 - 정신요양 시설 퇴소자 또는 퇴소예정자
 - 시설 입소 1년 이상인 자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미 수혜자
 - 담당 공무원의 자립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자립 형태 확인
- 선정기준
 - 주시설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준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설로의 전원(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전환시설), 원가정 복귀, 무료 임차, 기숙사 등 미자립 형태의 퇴소자
○ 지원내용 : 1인 15백만원 현금지원(1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마련 비용, 가전·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 가능 <p>※ 자립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주택보증금, 자립을 위한 생필품 구매 등)</p>
○ 협의결과 : 협의완료(2024년 3월 19일)

- 동 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에 14명, 2025년에 24명이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평균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24~2025년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실적 】

구분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자(총 38명)
2024	예산	225,000천원	→ 정신장애인 33명, 정신질환자 5명
	목표	15명x15000천원	
	실적	*14명x15000천원	
	달성을률	93.3%	
2025 (9월 말 기준)	예산	375,000천원	
	목표	25명x15000천원	
	실적	24명x15000천원	
	달성을률	96.0%	

*적정사용: 13명, 부적정 사용: 1명(부적정 사용액 9,019천원)

-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총 38명 중 33명은 정신장애인(복지부 ‘협의대상’), 5명은 정신질환자로 확인됨.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²⁸⁾ 제2조 [별표1] 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 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 즉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구별됨.
 - 2021년 기준, 정신질환자는 3,602,209명²⁹⁾으로 추정되고, 이중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04,214명³⁰⁾으로, 정신질환 중 정신장애로 인정되는 질환이 제한되어 있고 지속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는 등의 요건이 있어 전체 정신질환자 중 등록가능한 자는 일부만이 해당됨.
- 그런데 동 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본래의 목적·취지·사업명·사회보장제도 협의내용(=정신장애인)과 다르게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 금’ 예산의 일부를 정신질환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이는 현행법에 정의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업명,

28)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9) 제404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2023. 3.) 제110

보건복지부 자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의 F00~F99(정신 및 행동 장애)를 주상병으로 진단받은 자

30) 2021년 장애인 등록 현황

정신질환 분류 F코드 中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 장애 등 일부 진단만이 정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와 관련, 앞으로도 서울시가 정신질환자에게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①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³¹⁾ 및 ② 사업명칭 등의 변경이 필요해 보임.

3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

4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① 기금 총괄 현황

- 시민건강국은 식품정책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말 기금 조성 총액은 약 623억 3,166만원,
 -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약 84억 3,274만원, 지출액 약 38억 390만원,
 -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약 669억 6,050만원,
 - 총 조성 규모는 약 723억 2,386만원(2026년도말 조성액 + 응자금 미회수채권)임.

<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①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④ =③+①
	수입액 ②	지출액 ③	증 감 ⑤	
62,332	8,433	3,804	4,629	66,961

※ ①,④ = 은행 예치금 + 통합기금 예탁금

※ ② = 예치금 회수 수입 제외

※ ③ = 예탁금, 예치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2026년도말 조성액 ①	응자금 미회수채권 ②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 ③	총 조성 규모 ①+②+③=④
66,961	5,363	0	72,324

② 수입 현황

- 수입액: 8,433백만원(감 539백만원)

- 주요 증감사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대폭 확대(20억 → 200억) 된 '22년도 융자금이 '26년부터 융자금 회수 감액 전망으로 수입액 감액 편성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예치금 회수 제외)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합 계	8,972	8,433	△539
융자금회수	5,629	5,087	△542
이자수입	2,161	2,157	△4
과징금징수	1,149	1,150	1
기타수입	33	39	6

-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구 分	2025년(A)	2026년(B)	증감(B-A)	비 고
합 계	23,682,294	18,764,406	4,917,888	-
융자금 회수	5,606,709	5,058,450	△548,259	-
민간융자금 회수	5,606,709	5,058,450	△548,259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2,183,912	2,185,304	1,392	-
공공예금이자	405,727	419,682	13,955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이자	22,804	28,209	5,405	융자금 이자
예탁금 이자	1,751,400	1,731,600	△19,800	예탁금 이자
보조금 진액 이자	3,981	5,813	1,832	보조금 반납액 이자
과징금 징수	1,148,685	1,150,076	1,391	-
과징금	1,148,685	1,150,076	1,391	과징금 징수금
예치금 회수	14,709,509	10,331,664	△4,377,935	-
예치금 회수	14,709,509	10,331,664	△4,377,935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33,389	38,912	5,523	-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26,618	29,903	3,285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6,771	9,009	2,238	민간보조금 사용 잔액

③ 지출 현황

○ 지출액: 3,804백만원(증 454백만원)

- 주요 증감사유: 「건강 도시 서울 종합계획」 관련 4개 신규사업 운용계획(안)으로 지출예산 증액 편성

(단위: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감(B-A)
합 계	3,350	3,804	454
융자성사업	1,500	1,200	△300
비융자성 사업	1,845	2,599	754
기본경비	5	5	0

○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25년(A)	2026년(B)	증 감(B-A)
합 계	23,682,294	18,764,406	△4,917,888
융자성사업 (1개)	1,500,000	1,200,000	△300,000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1,500,000	1,200,000	△300,000
비융자성사업 (15개)	1,845,630	2,598,900	753,270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34,000	34,000	0
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416,900	416,900	0
4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85,000	185,000	0
5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256,400	237,400	△19,000
6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13,000	13,000	0
7 우리아이 건강키움 존 운용	-	70,000	70,000
8 다소비 가공식품 영양등급제 도입	-	90,000	90,000
9 다양한 식문화 확산 지원사업	-	50,000	50,000
10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	-	592,000	592,000

구분		2025년(A)	2026년(B)	증 감(B-A)
11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72,530	75,800	3,270
12	식품안전 전문교육	100,000	100,000	0
13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73,300	363,300	△10,000
14	전통시장 위생지도	10,000	10,000	0
15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10,000	9,000	△1,000
16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52,500	352,500	0
-	식생활개선사업 평가 및 방안연구 (폐지)	22,000	-	△22,000
예치금		10,331,664	11,960,506	1,628,842
	여유자금 예치	10,331,664	11,960,506	1,628,842
예탁금		10,000,000	3,000,000	△7,000,000
	여유자금 예탁	10,000,000	3,000,000	△7,000,000
기본경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④ 사업 현황

○ 기금사업 총괄표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비고
사업 수	13개	16개	3개	사업비 조정, 사업종료
사업 예산	약 3,350백만원	약 3,804백만원	약 454백만원	

- 감액 사업(4개, △330백만원):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300백만원),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19백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10백만원),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1백만원)
- 신규사업(4개, 802백만원): 우리아이 건강키움 존 운영(70백만원), 다소비 가공식품 영양등급제 도입(90백만원), 다양한 식문화 확산 지원사업(50백만원), 건강한 외식 환경조성(592백만원)

- **증액사업(1개, 3백만원)**: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3백만 원),
- **종료사업(1개, △22백만원)**: 식생활 개선 평가 및 방안연구(△22백만 원)

○ 기금사업별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년 최종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영업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기기·설비 설치비용 - 육성자금: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음식점 메뉴 개선 등을 위한 운영비 	1,500	1,200	△300
2	소비자식품위생감 시원 교육 및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위생) 지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위생 감시의 효율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및 직무교육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연수회 개최 	34	34	-
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3 ~ 12월 - 교육내용: 식품위생 관련 법규 해설 및 위생시책, 식중독 예방 등 	417	417	-
4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로 식품 안전 위해요소 사전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예방 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 등 집중관리 	185	185	-

사업명		사업개요	2025년 최종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5	먹거리 통계 및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먹거리 관련 통계 파악 및 식생활 변화 추적관리를 위해 조사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 서울 도시 먹거리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256	237	△19
6	먹거리 전략 식 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함께 만드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협치 활성화 및 통합추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및 먹거리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 먹거리 정책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신규사업 실행 지원 등 	13	13	-
7	우리 아이 건강 키움 존 운영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 식품 판매처에서 고당·고나트륨 노출을 줄이고 건강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 아동 청소년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키움 존 인증 기준 마련 - 건강 키움 존 매장별 인증 및 홍보 	0	70	70
8	다소비 가공식품 영양등급제 도입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제품에 있는 영양소 함량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영양표시 및 영양등급제 현황분석 - 영양등급기준 개발 및 정책평가 - 영양등급제 시범 적용 및 기업협력 추진 	0	90	90
9	다양한 식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및 다문화·세계 식품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음식점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서울시 정책 참여 업소 발굴 및 인증 - 건강음식점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0	50	50
10	건강한 외식 환 경조성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곡밥 선택 식당 도입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외식 환경조성 및 시민 건강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쾌한 한끼' 식당(잡곡밥 제공) 지정: 3,000개소 - '통쾌한 한끼' 식당 인증 및 유지관리 	0	592	592
11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운영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보(FSI) 누리집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관리(추가, 자료 현행화 등) - 상용소프트웨어(미들웨어, SSO) 및 시스템 유지관리 	73	76	3

사업명		사업개요	2025년 최종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12	식품안전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관리능력 향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 전문교육 과정(식품위생감시원 신규 및 보수 교육) - 산업체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교육 과정 	100	100	-
13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 식품 제조 판매업소 등 민관합동 점검 	373	363	△10
14	전통시장 위생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 및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식품 안전 지도 및 홍보 	10	10	-
15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환경변화 등 시대 상황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요소 개선 사업추진 - 정기 위해요인 발굴 추진단 운영 	10	9	△1
16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식품위생(안전)·식생활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한 식품환경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기간 : '24.10월~'25. 9월 ※ 평가시기 : '25. 10월~11월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자치구 실적·증빙 자료 검토 및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운영 	353	353	-

5 종합검토 의견

- 2026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향후 서울시의회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①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신규사업, ②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③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 ④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관련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신규사업’은 i) 향후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 확충(‘25년 25개소, ’26년 50개소, ’30년 100개소 운영 목표)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가사업 ‘국민체력100’과의 중복 문제, 두 사업 간 이해관계, 향후 자치구 설치·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주체 등 중장기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ii) 서울시 자체 개발 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모델’이 기존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시스템’보다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또 허리 디스크 등 신체질환자 중 서울시민 전용 ‘체력인증’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향후 서울시장 명의로 발급될 체력인증서의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끝으로 iii)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찾아가는 인증센터 운영’은 기존 국가사업(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장애인체력인증센터)과 향후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개소 예정인 자치구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체험행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4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할 필요성은 적어 보임

둘째,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은 i)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서울시의 ‘상환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ii)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은 i) 손목닥터9988 사업의 예산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ii) 서울시가 제출한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액 493억원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넷째,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i)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업명,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